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(서왕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6.

발 의 자 : 서왕진 · 김선민 · 백선희
정춘생 · 강경숙 · 황운하
김재원 · 차규근 · 박은정
김준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생활물류서비스 분야에서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및 열악한 업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노동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 이로 인하여 노동 및 안전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,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명시하는 한편 안전점검 결과보

고서 작성 및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노동 및 안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 36조, 제39조 및 제44조의2 등).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9호 중 “제39조에”를 “제39조제1항에”로 한다.

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그 밖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정 인력 확보, 설비 마련 및 근무시간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2, 제3호의3 및 제3호의4의 조치를 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,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4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관계”를 “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1조제1항제14호 중 “제39조에”를 “제39조제1항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9조(개선명령 및 권고)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44조의2(합동안전점검)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

제39조(개선명령 및 권고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2, 제3호의3 및 제3호의4의 조치를 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,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44조의2(합동안전점검) ① -----

---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---

다.

<신 설>

제5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~ 13. (생략)
- 14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택배서비스사업자
- 15. (생략)
- ② (생략)

-----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1조(과태료) ① -----

-----.

- 1. ~ 13. (현행과 같음)
- 14. -----제39조제 1항에-----
- 15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